



제426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경찰공무원 복식의 기능성·심미성 향상〉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04. 23.
3. 회 부 일 : 2025. 04.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절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적절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illegible]

경찰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다양한 기후와 물리적 여건에 노출되어 기능적 복식의 착용 필요성이 높고, 경찰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제복의 심미적 요소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한 철학과 원칙을 상위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도 복제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sup>1)</sup>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sup>2)</sup>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성과 심미성 향상에 관한 조치 또한 해당 규칙 내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사항임.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제복 착용의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3. 기동복(하복, 동복)
4. 점퍼(봄·가을, 겨울)
5. 파카(후한, 형광, 방한)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성·심미성 등 제복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기능성·심미성 등 제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을 점검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sup>3)</sup>

또한,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적정한 품질’, ‘기능성’, ‘심미성’ 등의 용어는 객관적인 정의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용어의 구체화 또는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례로, 경찰청이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10년 만에 발표한 2015년 경찰복 개정 당시, ‘신뢰·보호·청렴·치유’를 상징한다며 채택한 청록색 복장에 대해 경찰관 10명 중 9명이 반대 의견을 표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복식의 심미성에 대한 기준이 현장과 괴리될 경우 예기치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sup>4)</sup>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sup>5)</sup>에 따라, 법률에 특

---

3) 참고로, 소방공무원 복식의 기능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60호, 2025.04.23.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계류중.

4) 김성환, 한겨레신문, “청록색 새 경찰복, 경찰 10명중 9명이 별로라는데…10년만에 바뀌는 경찰복 ‘잡음’”(2015.11.17.)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정규칙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검역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군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소방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수산부 직원 등 제복 착용이 필수적인 공무원 집단의 복제 기준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법령 가운데 개정안처럼 ‘심미성’ 또는 ‘기능성’과 같은 표현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명시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6)</sup>

동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극한의 날씨와 고강도 활동에 적응해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국가공무원 직군별 복제 규정 형식 및 표현 비교」

| 제명   | 검역공무원<br>복제 규칙 | 교정공무원<br>복제규칙          | 군인<br>복제령 | 소년원 및<br>소년분류<br>심사원<br>공무원<br>복제규칙 | 소방공무원<br>복제 규칙 | 출입국관리<br>공무원<br>복제규칙      | 해양경찰청<br>소속<br>경찰공무원<br>복제에<br>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br>직원<br>복제규칙    |
|------|----------------|------------------------|-----------|-------------------------------------|----------------|---------------------------|--------------------------------------|------------------------|
| 형식   | 보건복지부령         | 법무부령                   | 대통령령      | 법무부령                                | 행정안전부령         | 법무부령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
| 근거규정 | 검역법<br>제33조제2항 | 국가공무원<br>복무규정<br>제8조의2 | -         | 국가공무원<br>복무규정<br>제8조의2              | 소방공무원법<br>제23조 | 출입국관리법<br>시행령<br>제92조     | 경찰공무원법<br>제26조                       | 국가공무원<br>복무규정<br>제8조의2 |
| 심미성  | -              | -                      | -         | -                                   | -              | -                         | -                                    | -                      |
| 기능성  | ○<br>(재질 성격)   | ○<br>(제복 명칭)           | -         | -                                   | -              | ○<br>(부품 명칭인<br>'기능성 패드') | -                                    | -                      |

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도의 기능성을 갖춘 적정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유지·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2026년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과 심미성을 반영한 복식을 연구·개발 중이라는 견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4 |